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4년 2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28 호

## 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(근무성적 평정) 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③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로자 소속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실·부장으로 한다. 다만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문 원 미 ( 3 9 0 - 7 6 4 1 )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근무성적 평정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팀의 팀장을 제1차 평정자로 하고 소속부서 부장을 제2차 평정자로 하며 <u>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.</u> 다만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0조(근무성적 평정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소속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실·부장으로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